

특별회원 관리규정

2004년 12월 20일 제2회 정기총회 제정

2012년 4월 25일 이사회 개정

2015년 8월 26일 이사회 개정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플랜트학회(이하 본회라 한다) 정관 7조 3항의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분) 특별회원은 단체회원 및 우수기업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3조 (대상) ① 단체회원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플랜트 관련 각급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.

② 우수기업회원은 플랜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사업본부 또는 동등한 조직이 설치된 공기업 및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 (가입)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특별회원 후보자는 본회 이사회의 추인을 거친 후 정식 회원으로 등록된다.

제5조 (회비) ①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500,000원 이상으로 한다.

② 우수기업회원은 필요에 따라 A, B 및 C로 구분하고 연회비는 각각 5,000,000원 이상, 3,000,000원 이상 및 1,500,000원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 (혜택) 특별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.

수혜 항목	수혜 내역			
	단체회원	우수기업회원A	우수기업회원B	우수기업회원C
학회지 광고게재	-	연4회	연4회	연2회
학회지 기업소개	-	요청 시 매회	요청 시 매회	최대 연2회
학회지 배포	2부	10부	6부	3부
학술대회 및 강연회 참가비	1인 면제	3인 면제	2인 면제	1인 면제
학회 발간도서 구입 및 각종 교육 참가	임직원 1인 정회원 대우	임직원 정회원 대우	임직원 정회원 대우	임직원 2인 정회원 대우
학회 홈페이지 소개	-	배너 연결	배너 연결	배너 연결
임직원 초청행사	-	3인 초청	2인 초청	1인 초청

제7조 (관리) ①특별회원의 일반관리는 총무이사가, 회비수납은 기획이사가 담당한다.

② 기획이사는 회비수납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, 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.

1. 1개월 간격으로 3회 독촉한다.
2. 계속 미납 시 제6조의 혜택을 중단하고,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보한다.
3. 단, 납부 일자를 약속할 경우 상기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.

특별회원 가입신청서

본 (단체, 회사)는 한국플랜트학회의 특별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

신청사 정보

항목		기 재 사 항
회 원 구 분		단체회원(), 기업회원()
단체/회사 명	국문	
	영문	
대표자/담당임원	성명	
	전화번호	
	E-mail	
실무자	성명	
	전화번호	
	E-mail	
단체/회사 주소	(우)	
홈페이지	http://	

신청항목

(기업회원은 아래 구좌분류의 해당 난에 'O'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)

- 1구좌 ()
- 2구좌 ()

2004. . .

사단법인 한국플랜트학회 회장 귀하

입금안내

- 은행 (예금주) : 외환은행 (사단법인 한국플랜트학회)
- 계좌번호 : 126-22-05635-4